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 2027학년도 재외국민및외국인

##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26. 9. 7(월) ~ 11(금) 6pm
- 면접고사 : 2026. 10. 7(수) ~ 8(목)

한국성서대학교 입학관리팀

[ipsi.bible.ac.kr](http://ipsi.bible.ac.kr) / T. 02-950-5403, 5425 / F. 070-4275-0165

# 목 차

---



## 2027학년도 수시모집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II. 전형일정	1
III. 전형료	1
IV. 지원자격	2
V. 지원자격 심사기준	5
VI. 전형방법	6
VII. 제출서류	7
VIII. 지원자 유의사항	10
IX. 합격자 유의사항	11

##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모집단위 (지원학과)	입학정원	모집인원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최대모집 가능인원	총 모집인원	
주간	성서학과	60	6명 이내	4명	모집인원 제한없음
	사회복지학과	34	3명 이내		
	영유아보육학과	34	3명 이내		
	AI융합학부	60	6명 이내		
	간호학과	45	4명 이내		

- ※ 재외국민 총 모집인원은 4명(총 입학정원의 2% 이내)이며, 모집단위별 최대 모집가능 인원은 각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입니다. 단,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순수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모집인원의 제한 없이 선발합니다.
- ※ 지원자의 수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모집인원의 제한이 있는 재외국민 전형 미충원 시 정시모집 기간에 순수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이월되어 모집합니다.

## 2. 전형일정

구분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비고
원서접수	2026. 9. 7(월) ~ 11(금) 6pm		본교 입학관리팀(복음관 1층) 방문 접수
서류제출	2026. 9. 7(월) ~ 18(금) 5pm		등기우편 및 방문 제출 ※ 9/18(금) 우편 소인(도장)까지 인정
면접고사	2026. 10. 7(수) ~ 8(목)		<b>순수외국인은 면접 없음</b>
합격	발표	2026. 11. 06(금) 16시	본교 입학홈페이지(ipsi.bible.ac.kr) 발표
	등록	2026. 12. 21(월) ~ 23(수) 16시까지	<b>본교 지정은행</b>
최종 등록	2027. 2. 10(수) ~ 12(금) 16시까지		

- ※ 지원자격 심사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또한,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에도 지원자격 및 기타사항의 확인 등으로 인한 수정·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순수외국인 모집의 경우 전형기간 자율모집으로 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3. 전형료

구분	전형료	구분	전형료
재외국민	60,000원	순수외국인	0원 (전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 4.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 1) 공통 : 국내외 포함하여 초·중·고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입학정원의 2% 이내 선발」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비고
외국영주 재외국민	영주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로서 <b>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b> 하고 귀국하는 자	
외국근무 재외국민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b>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b> 하고 귀국하는 자	※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외국인 중·고등학교에서 연속 2년 이상, 비연속시 3년(고교과정 1년 이상 포함) 이상 재학하여야 함 단, 해외선교사자녀 및 기타 재외국민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1년 이상 반드시 재학하여야 함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b>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b> 하고 귀국하는 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b>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b> 하고 귀국하는 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b>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b> 하고 귀국하는 자	
기타 재외국민	현지법인·자영업·연수·파견·출장·해외취업·선교활동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현지법인 근무, 자영업, 유학, 연수, 파견, 출장, 해외취업, 선교활동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의 자녀로서 외국학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는 자	※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반드시 해외에서 고교과정 2년(4학기 이상)을 재학하여야 함
외국국적 취득외국인	해외고교과정 2년이상 이수 외국인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단, 복수국적자 제외)	

#### ■ 재외국민 자격의 범위

- ※ 교포는 해외에 영주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자격인정 기준시점까지 유지해야 함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영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 외국정부 근무자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 국제기구 근무자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 해외근무자의 외국근무형태 인정기준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학·교육·연수 등의 외국 거주는 불인정

## ■ 최저 외국 재학 및 거주 기간

구분		최저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단위 : 년)								비고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류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외국영주 재외국민	영주교포자녀	2	2	2	-	2	2	2	2	
외국근무 재외국민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2	2	2	2	2	2	-	-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2	2	2	2	2	2	-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자녀	2	2	2	2	2	2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2	2	2	2	2	2	-	-	
기타 재외국민	현직법인·자영업·연수·파견· 출장·해외취업·선교활동	2	2	2	2	2	2	-	-	
외국국적 취득외국민	해외고교과정 2년 이상 이수 외국인	2	2	2	-	-	-	-	-	

- ※ 부모의 근무(영업·선교·유학 등), 거주(영주), 체류기간은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 ※ 부모의 최저 외국 체류기간은 지원자 재학 기간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보호자'는 부모 중 외국 근무자에 해당합니다.
- ※ 외국영주 재외국민의 경우 부모·학생의 영주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 ※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경우 보호자의 외국근무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보호자의 경력증명서 상에 명시된 해외 파견근무 기간을 벗어난 체류 및 재학 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기타 재외국민의 경우 부모의 외국 근무(영업·선교·유학 등)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 ※ 재학 기간은 재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학생이 실제로 재학한 기간입니다.
- ※ 당해 학교과정의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유효한 재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는 재학 학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체류 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해당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입니다.
- ※ 외국학교의 재학이 계속되는 경우 실제로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방학 등 수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한하여 재학 및 체류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단, 국내학교로의 전학일자 이후 방학 기간은 외국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외국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외국학교 재학 기간은 졸업예정일까지 인정합니다.
- ※ 외국학교에서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외국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기타 재외국민 중 부모의 유학은 국가 파견 유학 등이 속하며, 개인적인 단순 유학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모집정원 제한없음」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외국인	순수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국적 취득자의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중등 교육과정 이전 취득만 인정)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합니다. (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조)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포함)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12년 미만 학제를 가진 국가 : 필리핀,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등**
- ※ 이중국적자인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5. 지원자격 심사기준

### ■ 외국학교 인정기준

1. 외국학교란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한 국가 내에 속한 외국학교만을 인정합니다.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3. 외국학교 형태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만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합니다.

### ■ 외국학교 재학 및 체류기간 인정기준

1. 국내 학제(총 12년)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Grade 1 ~ Grade 6)	외국인 7~9학년 과정 (Grade 7 ~ Grade 9)	외국인 10~12학년 과정 (Grade 10 ~ Grade 12)

2.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부족한 학교 과정기간만큼 해당국 상급학교 과정(대학)을 고등학교 정정으로 인정합니다. 단, 부모가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중 12년 미만 학제를 가진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 초·중·고등학교 해당 학교 과정이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출신자,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자는 해당 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됩니다.
5. 같은 학년의 중복수학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 간 학제 차이로 인하여 국내 수학기간과 외국 수학기간이 중복된 경우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6. 당해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부족할 시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12년 과정에서 유치원 과정은 제외됩니다)
7. 위 기준 등을 원칙으로 지원자의 재학·체류기간을 인정하되 부득이하게 재학기간이 부족해진 자에 대한 인정 등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 자격인정 기준시점

우리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7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 지원자격 완화적용

해외근무 상사직원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시에 귀국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의 동반 거주·체류기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전형방법

###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면접	서류	합계
재외국민(입학정원의 2% 이내 선발)	전 모집단위	합/불	100%	1,000점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 모집단위	합/불	100%	1,000점
북한이탈주민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순수외국인	전 모집단위	<b>면접없음</b>	100%	1,000점

### ■ 전형기준

1. 합격자 선발은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진행합니다.
2. 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 중도 포기자, 부정행위자 등은 최종 불합격 처리합니다.
3.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본교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본교 소정의 절차 및 전형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전형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5. 외국인학생의 경우 수학능력이나 재정 상황을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외국소재학교 재학 기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7. 모집인원 내에 들더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등록포기로 인한 충원 합격자는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9. 최종 등록 후 미등록 결원에 따른 충원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 전형절차



## 7. 제출서류

### ■ 지원자별 제출서류 항목

지원자 구분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3.5cm×4.5cm 사진 2매 포함)</li> <li>외국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및 서약서 각 1부(본교 소정양식)</li> <li>학력조회 동의서 1부(본교 소정양식)</li> </ul>
영주교포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전 과정 졸업(예정)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재학사실증명서</li> <li>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교포, 국적상실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제출 요망)</li> <li>출입국사실증명서, 영주권사본, 재외국민등록등본 각 1부씩(학생 및 부모 서류 모두 제출)</li> <li>제 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li> </ul>
해외근무자 자녀 (공무원·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전 과정 졸업(예정)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재학사실증명서</li> <li>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교포, 국적상실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제출 요망)</li> <li>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등본 각 1부씩(학생 및 부모 서류 모두 제출)</li> <li>제 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li> <li>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li> </ul>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전 과정 졸업(예정)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재학사실증명서</li> <li>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교포, 국적상실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제출 요망)</li> <li>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등본 각 1부씩(학생 및 부모 서류 모두 제출)</li> <li>제 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li> <li>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li> </ul>
기타 재외국민 (선교사·자영업· 현지회사근무· 해외파견교직원· 유학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전 과정 졸업(예정)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재학사실증명서</li> <li>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교포, 국적상실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제출 요망)</li> <li>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등본 각 1부씩(학생 및 부모 서류 모두 제출)</li> <li>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li> <li>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li> </ul>
외국국적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전 과정 졸업(예정)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재학사실증명서</li> <li>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교포, 국적상실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제출 요망)</li> <li>출입국사실증명서 1부(학생서류만 제출)</li> <li>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예-중국 : 호구부)</li> <li>외국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사본(국적표시 필수)</li> <li>여권사본(학생서류만 제출)</li> <li>외국인등록증 사본(해당자, 앞뒷면 1장에 모두 복사하여 제출)</li> <li>재정능력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보증인의 한화 2,000만원 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한화 2,000만원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li> <li>-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li> <li>- 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본교 소정양식)</li> </ul> </li> <li>※ 예금잔고증명서 및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가 지원자 본인명의로인 경우 재정보증인의 재직 증명서, 과세증명서, 유학경비부담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li> </ul>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전 과정 졸업(예정)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li> <li>초·중·고 전 과정 재학사실증명서</li> <li>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교포, 국적상실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제출 요망)</li> <li>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등본 각 1부씩(학생서류만 제출)</li> </ul>
순수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li> <li>출입국사실증명서 1부(학생서류만 제출)</li> <li>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예-중국 : 호구부)</li> <li>외국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사본(학생 및 가족 서류 모두 제출, 국적표시 필수)</li> <li>여권사본(학생서류만 제출)</li> <li>외국인등록증 사본(해당자, 앞뒷면 1장에 모두 복사하여 제출)</li> <li>어학능력 입증서류(4P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능력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보증인의 한화 2,000만원 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한화 2,000만원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li> <li>(※ 국내 어학연수비자(D-4) 체류자는 한화 1,000만원 이상)</li> <li>-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li> <li>- 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본교 소정양식)</li> </ul> </li> <li>※ 예금잔고증명서 및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가 지원자 본인명의로인 경우 재정보증인의 재직 증명서, 과세증명서, 유학경비부담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li> </ul>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li> <li>• 학력인정서(지원자 본인 거주지역 소재 교육청 발급)</li> <li>•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지원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li> <li>※ 한국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며, 검정고시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li> </ul>

- ※ 외국소재 재학학교 재학사실증명서에는 "입학년·월·일"과 "졸업년·월·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해외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보호자 직업 증빙서류 안내
1.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 재직증명서(외국근무지 및 근무시간, 체류내용 명시)
  2. 상사직원 : 재직증명서(외국근무지 및 근무시간, 체류내용 명시),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3.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재직증명서,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한함)
  4. 해외선교사 : 선교단체장 발행의 선교파송증명서(파송국가 및 파송기간 명시), 해당 종교단체장 추천서
  5. 현지법인 근무자 : 법인등록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직위 및 재직기간 명시), 보호자 체류국 세금납부 증명서(지원자격 중 3년 분량)
  6.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서) 사본, 보호자 체류국 세금납부 증명서(지원 자격기간 중 3년 분량), 기타 증빙 서류
  7. 기타 :외국체류 및 경력증명 내용이 있는 증명서류(예 : 유학생 자녀-해당기간에 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학교 소재국에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기관임</li> <li>※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li> </ul> </li> <li>•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li> <li>-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중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문서</li> </ul> </li> <li>※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음</li> <li>• 아포스티유 협약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협약국가 등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a href="http://www.0404.go.kr">http://www.0404.go.kr</a>”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전용상담전화(☎02-2100-7500) 또는 영사콜센터(☎02-3210-0404) 문의</li> </ul>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제출서류는 접수기간(추가서류 제출기간 내) 내 본인이 지참하여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대리인 제출 시 지원자의 학력사항 및 해외거주.체류.재학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접수자의 질문에 응답해야 함</li> <li>•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증명서를 추가제출</li> <li>• <b>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문(공증 필)”을 첨부해야 함</b></li> <li>•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li> <li>•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본교의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li> </ul>

## ※ 지역 및 국가명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니우에,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마우리제도, 세이셸제도, 오만,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23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48개국)
북미	미국 (1개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25개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바레인, 브룬디 (11개국)
총계	108개국

## 8. 원서접수 유의사항

### ■ 전형료 환불규정 안내

원서접수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에 한하여 본교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 전형료가 반환됩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 단, 수수료 5,000원은 제외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는 본교 입학관리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추가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원서접수가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절대로 원서작성 내용의 수정 및 취소, 환불 등이 불가능하므로 접수하기 전 모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입학원서 접수 후 추가제출서류는 추가제출서류접수 기간 내 본교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추가제출서류 제출 마감은 9/18(금) 오후 5시까지이며, 등기우편 발송 시 우체국 소인(도장)이 있는 경우까지만 인정됩니다.**
4. 입학원서 작성 시 반드시 국내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해외 거주중인 외국인은 제외), 기재하는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필히 연락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교에 변경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기타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순수외국인은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자,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자, 지원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5. 본교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 없이 입학할 수 없습니다.
6. 입학사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입학 후 제반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릅니다.
8.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9. 합격발표 및 등록안내

### ■ 최초합격자 발표

- 일시 : 2026. 11. 06(금) 16시
- 장소 :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ipsi.bible.ac.kr>)  
※ 합격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예치금 및 최종 등록금 납부

- 기간
  - ① 예치금 : 2026. 12. 21(월) ~ 23(수) 16시까지
  - ② 최종 등록금 : 2027. 02. 10(수) ~ 12(금) 16시까지
- 장소 : 본교 지정은행 고지서 납부 및 계좌이체

## 10. 합격자 유의사항

1.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2.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에 이중등록을 금지합니다. 등록은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필해야 합니다.
3. 수시모집 합격자(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의 경우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최초합격자의 경우 합격여부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순수외국인 등록자 유의사항

1. 유학비자 발급신청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는 합격 후 등록금을 완납한 자에게만 발급되며,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유학비자 발급신청은 지원자가 표준입학허가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즉시(해외거주자는 입국 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합격자는 입학 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매월 보험료 납입)에 가입해야 합니다.